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24. ~ 5. 1.) 예정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10명(7등급·8등급 또는 4급 3명, 5등급·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4등급 또는 6급·7급 4명, 9급 1명)”을 “11명(9등급 또는 3급 1명, 7등급·8등급 또는 4급 3명, 5등급·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4등급 또는 6급·7급 4명, 9급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생 략) 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10명(7등급·8등급 또 는 4급 3명, 5등급·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4등급 또는 6 급·7급 4명, 9급 1명)</u> 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1명(9등급 또는 3급 1 명, 7등급·8등급 또는 4급 3명, 5등급·6등급 또는 5급 2명, 3 등급·4등급 또는 6급·7급 4 명, 9급 1명)</u> -----.